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63호 2026. 10. 19.(월)

공 고

- 「204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시민계획단 참가자 모집 공고 2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5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공고 제2026-1347호

「204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민계획단 참가자 모집 공고

「204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함께할 ‘우리동네 시민계획단*’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시민계획단이란?

‘시민계획단’이란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미래상 설정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20년단위 법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목포 시민들이 직접 계획 수립 주체로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기구(Resident Participatory Governance Organization)를 뜻합니다.

2026. 10. 16.

목 포 시 장

1 모집개요

- ☐ 모집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30.(금) 18:00까지
- ☐ 모집인원 : 40명 내외(무보수 명예직) ※ 모집인원 상황에 따라 유동적 조정가능
- ☐ 모집대상 : 지역 도시계획에 관심 있는 목포시민
※ 관내 사업장 근무자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 도시계획분야 전공 대학교 재학생 포함
- ☐ 신청방법 : 홈페이지의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발송(ggg3587@korea.kr)
- ☐ 선정방법 : 자체선정 기준에 의함
 -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 아이디어 도출 활동 경험이 많은 자
 - 지역,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을 균형적으로 선정
 - 평일에 개최되는 3회차 행사에 모두 참석 가능하신 분
- ※ 11월 중 3회(16일, 19일, 30일) 14시~17시, 목포축구센터 본관동 4층 스카이라운지(예정)
- ☐ 선정결과 발표 : 2026년 11월 초, 개별 통지 예정(선정시 위촉장 수여)

2

활동개요

- ☐ 204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민계획단 프로그램 참석(총 3회)
- 목포시 현황 파악 및 진단, 문제점 도출
 - 목포시 미래상 찾기, 분야별 이슈 발굴, 개선안 찾기
 - 도시기본계획 추진체계도 작성 및 발표, 공유
 - 목포 미래상 전달
- ☐ 기간/장소 : 2026. 11. /목포축구센터 본관동 스카이라운지(4층)
- 평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간 이내 총 3회 오프라인 프로그램 참석
 - 활동일정(안)

구분	세부내용
1차 (‘26.11.16.월)	- 시민계획단 발족 - 204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사전 설명 - 지역 현황 파악 및 진단, 문제점 도출
2차 (‘26.11.19.목)	- 도시미래상 설정 - 분야별 이슈 발굴 및 점검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안 찾기
3차 (‘26.11.30.월)	- 도시기본계획 추진체계도 작성 - 실천과제 도출 및 결과보고 - 목포시에 도시미래상 전달

※ 일정은 예정이며, 참여자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 ☐ 주 최 : 목포시
- ☐ 주 관(수행기관) : (주)경호 엔지니어링, (주)대현기술개발
- ☐ 관련 문의 : 목포시 도시디자인과 (☎061-270-8414)

붙임 : 204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참가신청서 1부. 끝.

[붙임]

2040 목포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신청서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 택 : 휴대전화 :			E-mail :	
직업(소속)					
희망분과	1순위			2순위	
	※ 아래의 분과 中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분과 1,2순위를 정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과	2분과	3분과	4분과	
	도시/교통 원도심 활성화 도심 및 시가지정비 주거환경 대중교통 교통인프라 보행도로 등	관광/경제 일자리 창출 특화산업 사회적 기업 균형발전 관광·문화 콘텐츠	교육/복지 평생교육 생활체육 저출산 고령화 복지·문화시설 자원봉사 등	안전/환경 공원·녹지 생태하천 친환경에너지 도시미관, 스마트팜 의료방역체계 재해예방, 방법 등	
개인정보 활용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40 목포 도시기본계획을 위한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기 위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필수입력) : 성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직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행사 종료 후 1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시민계획단을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 고					

위 본인은 「2040 목포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시민계획단」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목포시장 귀하

목포시 공고 제2026-1349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시 역점시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신규 행정 수요 대응 및 창조적인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일과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기구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괄

- 기 존 : 10국 49과(실)
- 개 편 : 10국 50과(실)

○ ‘국’ 단위 개편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비고
명칭변경	기획관리국	기획재정국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산업국	
	도시공원국	도시건설국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교통국	
직제변경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교통국, 도시건설국	

○ ‘과’ 단위 개편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비고
신 설	-	시민주권실	
	-	징수과	
	-	통합돌봄과	
폐 지	큰목포기획단	-	
	관광거점도시추진단	-	
소속변경	기획관리국 스마트정보과	경제산업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안전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도시건설국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비고
명칭변경	여성가족과	<u>성평등가족과</u>	
	민원봉사실	<u>종합민원실</u>	
	도시디자인과	<u>도시계획과</u>	
소속변경 명칭변경	미래전략산업국 청년인구과	<u>부시장 직속 인구청년실</u>	
	도시공원국 도시유산과	<u>관광문화교육국 문화유산과</u>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27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 2026. 10. 16. ~ 10. 23.(7일간)

9.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3일까지 목포시장(자치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9),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061-270-34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관리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미래전략산업국, 해양수산환경국,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을 “경제산업국, 해양수산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건설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시장 직속으로 시민주권실을 두고, 부시장 직속으로 인구청년실, 감사실을 둔다.

제6조의 제목 “(기획관리국에 두는 과)”를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관리국에 기획예산과, 큰목포기획단”을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로, “회계과, 스마트정보과”를 “징수과, 회계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등세무행정”을 “부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4.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징수, 과표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을 “성평등가족과, 통합돌봄과, 종합민원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희망복지지원, 보훈단체”를 “보훈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활지원, 주거급여, 장애인복지”를 “장애인복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육”을 “성평등·가족정책, 보육”으로, “청소년, 여성·가족정책”을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합돌봄, 희망복지지원, 자활지원, 주거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교육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미디어마케팅”을 “미디어마케팅, 미식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

3호) 중 “문학관 관리·운영”을 “문화산업 콘텐츠, 문학관 관리·운영”으로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발굴, 근대역사공간조성, 문화유산 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의 제목 “(미래전략산업국에 두는 과)”를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을 “경제산업국”으로, “청년인구과, 농업정책과”를 “농업정책과, 스마트정보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전략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단지”를 “골목상권, 산업단지”로, “관리·운영”을 “관리·운영, 사회연대경제, 일자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보·통신 운영, 정보·통신 보안, 통계,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제1호 중 “섬종합개발”을 “섬종합개발 및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산업”을 “김 등 수산산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도시공원국에 두는 과)”를 “(안전교통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안전교통국에 재난안전과, 건축행정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둔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공원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재생, 주거지재생, 재생시설”을 “교통행정, 운수사업, 교통지도, 교통시설, 교통정보, 주차장 조성·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1. 안전행정총괄, 안전교육, 안전신고, 생활안전, 재난관리, 안전점검,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 방재, 재난재해대책 및 응급복구, 민방위 전반,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비상계획업무,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전반, 버스·공항·철도교통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의 제목 “(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를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행정, 운수사업, 교통지도, 교통시설, 교통정보”를 “도시재생, 재생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계획 전반, 도시계획도로사업, 전문건설업면허, 경관기획, 도로·경관조

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 옥암·임성지구, 환지 업무에 관한 사항

4. 도시공원조성·시설, 시가지 녹화, 화훼, 산림보호, 국·공유 임야, 유달산공

원 관리, 삼학도 공원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7년도 상반기 목포시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감사실, 기획관리국,”을 “시민주권실, 인구청년실, 감사실,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미래전략산업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을 “안전교통국, 도시건설국,”으로 한다.

② 목포시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기획관리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③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4항 중 “도시공원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⑤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 도시공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기획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기획재정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관리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도시공원국장, 보건소장”을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⑧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⑨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⑩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기획재정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⑪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⑫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미래전략산업국장”을 “기획재정국장·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⑬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기획관리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을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⑭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래전략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⑮ 목포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을 “기획재정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⑯ 목포시 관리방조제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⑰ 목포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⑱ 목포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제26조제3항 중 “경제수산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⑲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⑳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도시공원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도시유산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하고, “도심개발담당주사”를 “도심재생담당주사”로 한다.

㉑ 목포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공원국장”을 각각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㉒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공원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㉓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공원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㉔ 목포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공원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㉕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공원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㉖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공원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㉓ 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도시공원국장 ·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 ·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㉔ 목포시 해양수산물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공원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㉕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공원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㉖ 목포시 도로굴착 · 복구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㉗ 목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이하 “안전도시건설국장”이라 한다)”를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㉘ 목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각각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㉙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㉔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별표2부터 별표5까지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인재육성과”를 “교육과”로 하며, “도시유산과”를 “문화유산과”로 한다.

㉕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㉖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각각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㉗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㉘ 목포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9조 중 “여성가족과장”을 각각 “성평등정책과장”으로 한다.

㉙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민원봉사실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㉚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 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u>기획 관리국</u> , <u>자치행정복지국</u> , <u>관광 문화교육국</u> , <u>미래전략산업국</u> , <u>해양수산환경국</u> , <u>도시공원국</u> , <u>안전건설교통국</u> 을 둔다.	제4조(국의 설치) ----- ----- <u>기획 재정국</u> ----- ----- <u>경제산업국</u> , <u>해양수 산환경국</u> , <u>안전교통국</u> , <u>도시건 설국</u> -----.
제5조(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 좌기관의 설치) ① <u>부시장 직 속</u> 에 <u>감사실</u> 을 둔다. ② <u>감사실장</u> 은 <u>시정감사전반</u> , <u>공직자재산등록</u> , <u>고충민원처리 업무</u> 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 좌기관의 설치) <u>시장 직속</u> 으로 <u>시민주권실</u> 을 두고, <u>부시장 직 속</u> 으로 <u>인구청년실</u> , <u>감사실</u> 을 둔다.
제6조 (<u>기획관리국에 두는 과</u>) ① <u>기획관리국에 기획예산과</u> , <u>큰목 포기획단</u> , <u>홍보과</u> , <u>세정과</u> , <u>회계 과</u> , <u>스마트정보과</u> 를 둔다. ② <u>기획관리국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u>지역 통합 협력, 의대 유치 업무</u> 에 관한 사항 <u><신 설></u> 3. 4. (생 략)	제6조(<u>기획재정국에 두는 과</u>) ① <u>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u> ----- ----- <u>징수 과</u> , <u>회계과</u> -----. ② <u>기획재정국장</u>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u>지방세 및 세외수입 · 과태료 징수, 과표조사에 관한 사항</u> 2. 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무
행정에 관한 사항

5. (생략)

6. 정보·통신 운영, 정보·통신
보안, 통계,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
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을 둔
다.

② 자치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복지행정, 기초생활보장·의
료급여, 서비스연계, 자원봉
사, 통합조사, 통합관리, 희망
복지지원, 보훈단체, 이웃돕기
업무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자활지원, 주거급
여, 장애인복지, 장사문화 업
무에 관한 사항

4.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가
족정책, 드림스타트, 결혼중개
업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3. ----- 부과-----

5. (현행과 같음)

<삭제>

제7조(자치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

성평등가족과, 통합돌봄과, 종
합민원실-----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보훈
단체-----

3. ----- 장애인복지-----

4. 성평등·가족정책, 보육-----
-- 청소년-----

5. 통합돌봄, 희망복지지원, 자

5. (생 략)

제8조(관광문화교육국에 두는 과)

① 관광문화교육국에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스포츠산업과를 둔다.

② 관광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기획 총괄, 관광 진흥·홍보, 미디어마케팅, 관광 사업 및 시설관리, 축제, 음악분수 업무에 관한 사항

2.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신 설>

3. 문화예술진흥, 시립예술단체 운영·지원,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관리·운영, 문학관 관리·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4.·5. (생 략)

제9조(미래전략산업국에 두는 과)

① 미래전략산업국에 지역경제

활지원, 주거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8조(관광문화교육국에 두는 과)

① -----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교육과-----
-----.

② -----
-----.

1. -----
--- 미디어마케팅, 미식산업-----

<삭 제>

3.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발굴, 근대역사공간조성, 문화유산 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

2. -----

----- 문화산업 콘텐츠, 문학관 관리·운영 -----

4.·5. (현행과 같음)

제9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

과, 전략산업과, 청년인구과, 농업정책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상정·소상공인, 전통시장, 산업단지, 노동조합, 중소기업 지원 관리·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2. (생략)

3. 일자리·고용 업무, 청년 정책, 인구정책, 이민·외국인 정책, 출생장려에 관한 사항
<신설>

4. (생략)

제10조(해양수산환경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해양수산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항만정책, 항만물류, 공유수면관리·매립면허, 해양오염방지, 섬종합개발, 해양레저업무에 관한 사항

----- 농업정책과, 스마트정보과----

② 경제산업국장-----
-----.

1. -----

-- 골목상권, 산업단지-----
----- 관리·운영, 사회연대경제, 일자리 -----

2. (현행과 같음)

<삭제>

4. 정보·통신 운영, 정보·통신 보안, 통계,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0조(해양수산환경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섬종합개발 및 관리 -----

2. 수산산업, 해양자원 조성·보호, 어업면허, 수산물유통·원산지표시, 수산식품 업무에 관한 사항

3.·4. (생략)

제11조(도시공원국에 두는 과) ① 도시공원국에 도시디자인과, 건축행정과, 도시재생과, 도시유산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공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전반, 도시계획도로사업, 전문건설업면허, 경관기획, 도로·경관조명 업무에 관한 사항

2. (생략)

3. 도시재생, 주거지재생, 재생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발굴, 근대역사공간조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 옥암지구,

2. 김 등 수산산업-----

3.·4. (현행과 같음)

제11조(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교통국에 재난안전과, 건축행정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

-----.

1. 안전행정총괄, 안전교육, 안전신고, 생활안전, 재난관리, 안전점검,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 방재, 재난재해대책 및 응급복구, 민방위 전반,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비상계획업무,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교통행정, 운수사업, 교통지도, 교통시설, 교통정보, 주차장 조성·관리 -----

4. 대중교통 전반, 버스·공항·철도교통 업무에 관한 사항

환지 업무에 관한 사항

5. 도시공원조성·시설, 시가지 녹화, 화훼, 산림보호, 국·공유 임야, 유달산공원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행정총괄, 안전교육, 안전신고, 생활안전, 재난관리, 안전점검,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 방재, 재난재해대책 및 응급복구, 민방위 전반,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비상계획 업무,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2. (생략)

3. 교통행정, 운수사업, 교통지도, 교통시설, 교통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전반, 버스·공항·철도교통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1조의2(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

1. 도시계획 전반, 도시계획도로사업, 전문건설업면허, 경관기획, 도로·경관조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 옥암·임성지구, 환지 업무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도시재생, 재생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

4. 도시공원조성·시설, 시가지 녹화, 화훼, 산림보호, 국·공유 임야, 유달산공원 관리, 삼학도 공원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26-1350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국가정책 수요 및 우리 시 지역현안 수요 기준인력 확보 인원을 정원에 반영하고,
-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안 제2조)

가. 공무원의 총수 : 1,374명 ⇒ 1,402명 (증 28명)

나. 집행기관의 정원 : 1,339명 ⇒ 1,367명 (증 28명)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안 제4조, 별표 3)

(단위 : 명)

구 분		현 행						조 정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374	1,374						1,402 (⊕ 28)	1,402 (⊕ 28)			
정무직													
일반직	소계	1,357	1,357						1,385 (⊕ 28)	1,385 (⊕ 28)			
	3급	1	1					1	1				
	4급	10	7	1	1	1		10	7	1	1	1	
	5급	70	33	3	3	8	23	71 (⊕ 1)	34 (⊕ 1)	3	3	8	23
	6급 이하	1,276	1,276						1,303 (⊕ 27)	1,303 (⊕ 27)			
연구직	소계	13	13						13	13			
	연구관	2	1			1		2	1			1	
	연구사	11	11						11	11			
지도직	소계	3	3						3	3			
	지도관												
	지도사	3	3						3	3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7.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 2026. 10. 16. ~ 10. 23.(7일간)

9.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3일까지 목포시장(자치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9),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061-270-34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1,374명”을 “1,40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39명”을 “1,36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402	1,402				
정무직계	1	1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85	1,385				
3급	1	1				
4급	10	7	1	1	1	
5급	71	34	3	3	8	23
6급이하	1,303	1,303				
연구직계	13	13				
연구관	2	1			1	
연구사	11	11				
지도직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공무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1,374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공무원의총수)----- ----- <u>1,402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1,339명</u>							1. ----- : <u>1,367명</u>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table><tr><th>기관별 직급별</th><th>총계</th><th>본청</th><th>의회</th><th>직속 기관</th><th>사업 소</th><th>동</th></tr><tr><td>총 계</td><td>1,374</td><td colspan="5">1,374</td></tr><tr><td>정무직계</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정무직</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일반직계</td><td>1,357</td><td colspan="5">1,357</td></tr><tr><td>3급</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4급</td><td>10</td><td>7</td><td>1</td><td>1</td><td>1</td><td></td></tr><tr><td>5급</td><td>70</td><td>33</td><td>3</td><td>3</td><td>8</td><td>23</td></tr><tr><td>6급이하</td><td>1,276</td><td colspan="5">1,276</td></tr><tr><td>연구직계</td><td>13</td><td colspan="5">13</td></tr><tr><td>연구관</td><td>2</td><td>1</td><td></td><td></td><td>1</td><td></td></tr><tr><td>연구사</td><td>11</td><td colspan="5">11</td></tr><tr><td>지도직계</td><td>3</td><td colspan="5">3</td></tr><tr><td>지도관</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지도사</td><td>3</td><td colspan="5">3</td></tr></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 계	1,374	1,374					정무직계	1	1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57	1,357					3급	1	1					4급	10	7	1	1	1		5급	70	33	3	3	8	23	6급이하	1,276	1,276					연구직계	13	13					연구관	2	1			1		연구사	11	11					지도직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table><tr><th>기관별 직급별</th><th>총계</th><th>본청</th><th>의회</th><th>직속 기관</th><th>사업 소</th><th>동</th></tr><tr><td>총 계</td><td><u>1,402</u></td><td colspan="5"><u>1,402</u></td></tr><tr><td>정무직계</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정무직</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일반직계</td><td><u>1,385</u></td><td colspan="5"><u>1,385</u></td></tr><tr><td>3급</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4급</td><td>10</td><td>7</td><td>1</td><td>1</td><td>1</td><td></td></tr><tr><td>5급</td><td><u>71</u></td><td><u>34</u></td><td>3</td><td>3</td><td>8</td><td>23</td></tr><tr><td>6급이하</td><td><u>1,303</u></td><td colspan="5"><u>1,303</u></td></tr><tr><td>연구직계</td><td>13</td><td colspan="5">13</td></tr><tr><td>연구관</td><td>2</td><td>1</td><td></td><td></td><td>1</td><td></td></tr><tr><td>연구사</td><td>11</td><td colspan="5">11</td></tr><tr><td>지도직계</td><td>3</td><td colspan="5">3</td></tr><tr><td>지도관</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지도사</td><td>3</td><td colspan="5">3</td></tr></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 계	<u>1,402</u>	<u>1,402</u>					정무직계	1	1					정무직	1	1					일반직계	<u>1,385</u>	<u>1,385</u>					3급	1	1					4급	10	7	1	1	1		5급	<u>71</u>	<u>34</u>	3	3	8	23	6급이하	<u>1,303</u>	<u>1,303</u>					연구직계	13	13					연구관	2	1			1		연구사	11	11					지도직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 계	1,374	1,374																																																																																																																																																																																																																													
정무직계	1	1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57	1,357																																																																																																																																																																																																																													
3급	1	1																																																																																																																																																																																																																													
4급	10	7	1	1	1																																																																																																																																																																																																																										
5급	70	33	3	3	8	23																																																																																																																																																																																																																									
6급이하	1,276	1,276																																																																																																																																																																																																																													
연구직계	13	13																																																																																																																																																																																																																													
연구관	2	1			1																																																																																																																																																																																																																										
연구사	11	11																																																																																																																																																																																																																													
지도직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 계	<u>1,402</u>	<u>1,402</u>																																																																																																																																																																																																																													
정무직계	1	1																																																																																																																																																																																																																													
정무직	1	1																																																																																																																																																																																																																													
일반직계	<u>1,385</u>	<u>1,385</u>																																																																																																																																																																																																																													
3급	1	1																																																																																																																																																																																																																													
4급	10	7	1	1	1																																																																																																																																																																																																																										
5급	<u>71</u>	<u>34</u>	3	3	8	23																																																																																																																																																																																																																									
6급이하	<u>1,303</u>	<u>1,303</u>																																																																																																																																																																																																																													
연구직계	13	13																																																																																																																																																																																																																													
연구관	2	1			1																																																																																																																																																																																																																										
연구사	11	11																																																																																																																																																																																																																													
지도직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

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3.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